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8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이훈기 · 이상식
신장식 · 강경숙 · 이해민
윤종오 · 정혜경 · 김재원
김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,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특히 심야시간대,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 통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속도 제한이 유지됨에 따라 규제의 합리성과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,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.

한편,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기술의 발전으로 어린이 통행량과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탄력적·맞춤형 속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근

거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어린이의 통행량,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·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6항 신설 등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.

⑦ 시장등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후 3년마다 어린이 통행량,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호구역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